

고성군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민간위탁 동의안

(의안번호 제2698호)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3. 10. 06.

고 성 군 수

나. 회 부 일 자 : 2023. 10. 12.

다. 상 정 · 의 결 일 자 : 2023. 10. 18. 산업경제위원회 상정·원안가결

2. 제안이유

- 고성군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민간 위탁 운영기간이 2023. 12. 31.자로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 필요
- 장애인 및 노약자 등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하여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과 권익을 증진하고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코자 「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」 제6조제2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

3. 위탁 근거

가. 「고성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」 제12조제2항

나. 「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」 제6조제2항

4. 위탁내용

○ 위탁개요

- 위탁 운영기간: 2024. 1. 1. ~ 2026. 12. 31.(3년)

- 위탁 운영비: 약 708,366천원 정도/1년(붙임1 참조)

※ 정부노임단가 상승에 따른 인건비 부담으로 위탁운영비 증감요인 있음.

- 위탁 방법: 공개 모집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(10월 중 공고 예정)

○ 위탁내용

-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(24시간)

- 특별교통수단 운행 및 유지관리

- 특별교통수단 이용 정보 관련 통계 관리

○ 운영현황: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9대(2024년 3대 증차 예정)

연번	차량번호	차종	소유자	등록일	비고
1	72보9432	카니발	고성군수	2017. 10. 20.	
2	72보9440	카니발	고성군수	2019. 04. 26.	
3	72보9447	카니발	고성군수	2019. 04. 26.	
4	72보9452	카니발	고성군수	2019. 04. 26.	
5	72보9435	카니발	고성군수	2020. 04. 14.	
6	72보9423	카니발	고성군수	2020. 10. 28.	
7	76누4927	카니발	고성군수	2021. 10. 05.	
8	76누4926	카니발	고성군수	2023. 01. 25.	
9	76누4909	카니발	고성군수	2023. 06. 26.	
10	-	카니발	고성군수	2024. ~	구입예정
11	-	카니발	고성군수	2024. ~	구입예정
12	-	카니발	고성군수	2024. ~	구입예정

-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법정기준대수 변경(9대 → 12대)

- 당초: 보행상 중증장애인 150명당 1대
- 변경: 보행상 중증장애인 100명당 1대

5. 참고사항

- 가. 민간위탁금 산출내역서: 붙임 1
- 나.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결과: 붙임 2
- 다. 관계법령: 붙임 3

6. 전문위원 검토요지

○ 제출 사유

- 본 동의안은 군수로부터 제출된 안전으로, 고성군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민간 위탁기간 만료(2023.12.31.)로 인한 위탁사업자 재선정을 위해 「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」 제4조 및 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기 위해 제출되었음.

○ 주요 내용

- 위탁사무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.

[참고] 위탁사무 개요

- 위탁사무: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및 관리
 - 특별교통수단: 9대(2024년 법적기준대수 변경에 따라 3대 증차 예정)
- 위탁기간: 2024 ~ 2026년(3년간)
- 위 탁 비: 2024년 기준 708백만원
 - ※ 2025 ~ 2026년도 사업비 미확정
- 위탁방법: 공개모집 후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 후 선정

○ 종합검토 의견

- 본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, 위탁근거 및 절차 등은 관련 법령에 부합되며, 위탁사무 수행의 전문성 및 서비스 공급의 안정성 등을 고려할 때 전문성을 가진 업체 등에 위탁 운영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사료됨.

7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(위원회 회의록 기재)

8. 토 론 : 없음.

9. 심사결과 : 2023. 10. 18. 원안가결 함.